

인천지방법원 2024. 3. 27 선고 2023가단1147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3. 20.

판 결 선 고 2024. 3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 - 나. 2023. 8. 6.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지영

별지